온라인 다크패턴 규제 하위법령 입법예고

- 공정거래위원회, 전자상거래법 하위법령 위임 사항 구체화한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 마련 -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를 위하여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전자상거래법**')의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2024. 7. 18. 부터 2024. 8. 27. 까지 입법예고 하였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금년 2월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를 신설한 개정 전자상거래법의 시행을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개정안은 시행령과 시행규칙에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해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기준을 마련하였습니다.

1. 배경
2. 주요 내용
3. 시사점

1. 배경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의 배경은 온라인 다크패턴으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정책적 노력에서 비롯되었습니다. 2023년 4월, 공정위는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정책 방향」을 발표하며, 이를 4가지 유형과 19개 세부유형으로 분류하고 규율 필요성을 검토했습니다. 이때 공정위는 현행법 적용이 어려운 6개 행위에 대해서는 법적 근거를 보완하기 위해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고, 다크패턴 행위를 명확히 안내하기 위해 가이드라인을 제정할 것을 밝혔습니다.

공정위는 위 정책방향에 맞추어 2023년 7월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제정하여 사업자와 소비자에게 구체적인 지침을 제공했습니다. 또한6개 유형의 온라인 다크패턴에 대한 규제 내용을 포함한 전자상거래법 개정안이 2024. 1. 25.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2024. 7. 18 개정법 시행(2025. 2. 14.)에 맞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시행령과 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였습니다. 이 개정안은 법에서 위임된 사항을 구체화하고,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에 대한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을 마련하는 등 법 시행을 위한 세부 사항을 담고 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2. 주요 내용

가. (숨은갱신) 증액・유료전환 전 소비자 동의·고지 기간 구체화(시행령 개정안 제20조의2)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13조 제6항은 소비자가 정기결제 대금의 증액 또는 유료 전환 시점을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발생하는 피해("숨은 갱신" 유형)를 방지하기 위해 통신판매업자에게 ① 재화등의 정기결제 대금이 증액되거나 ② 재화등이 무상으로 공급된 후 유료 정기결제로 전환되는 경우 그 증액 또는 전환이 이루어지기 전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내에 변동 전후의 가격 등에 대한 소비자의 동의를 받고, 취소하거나 해지하기 위한 조건・방법과 그 효과를 소비자에게 고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소비자의 사전 동의·고지 기간을 ① 정기결제 대금 증액의 경우에는 30일, ② 유료 전환의 경우에는 14일로 규정하였습니다.

나. (반복간섭) 반복 요구가 허용되지 않는 최소 기간 구체화(시행령 개정안 제27조의2)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5호는 소비자가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팝업창 등을 통해 반복적으로 요구함으로써 소비자의 자유로운 의사결정을 방해하는 행위("반복간섭" 유형)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 선택・결정의 변경을 요구할 때 소비자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간 이상 동안 그러한 요구를 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개정안에서는 소비자가 7일 이상 이미 선택・결정한 내용의 변경을 다시 요구받지 않도록 선택할 수 있게 한 경우 반복간섭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통상 1일 또는 3일동안 다시 보지 않도록 하는 단순 광고나 공지사항과 달리, 반복간섭은 소비자의 선택・결정 변경을 반복하여 요구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것이므로, 보다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였습니다.

다. (순차공개가격책정)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고지 방법 구체화(시행규칙 개정안 제11조의4)

개정 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2 제1항 제1호는 사이버몰을 통하여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화면에서 소비자가 그 재화 등을 구매・이용하기 위하여 필수적으로 지급하여야 하는 총금액 중 일부 금액만을 표시・광고하는 행위("순차공개 가격책정" 유형)를 금지하였습니다. 다만,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고, 그 사유를 총리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소비자에게 알린 경우는 제외하였습니다.

개정안은 재화 등의 가격을 표시・광고하는 첫 화면에서 ① 총금액을 표시・광고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 및 ② 추가 항목이 총금액에서 제외되었고 소비자의 선택에 따라 추가 항목의 가격이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알린 경우 순차공개 가격책정에서 제외하도록 하였습니다.

라.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 영업정지 처분 및 과태료 부과 기준 마련(시행령 [별표])

개정 전자상거래법은 온라인 다크패턴 관련 의무를 위반한 경우 사업자에게 시정조치 및 5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일정 요건 충족 시 1년 이내의 영업정지(또는 영업정지에 갈음하는 과징금)를 처분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습니다. 이에 따라 구체적인 영업정지 및 과태료 기준 마련이 필요하였습니다.

개정안은 6가지 유형의 다크패턴 관련 위반행위를 영업정지 및 과태료 부과 대상에 추가하고 위반횟수에 따른 영업정지 기간 및 과태료 금액 기준을 신설하였습니다. 기존의 거짓・과장 광고나 기만적 소비자 유인행위와 유사한 수준의 제재를 적용하여 영업정지 기간은 위반 횟수에 따라 1차 3개월, 2차 6개월, 3차 12개월로 정했습니다. 또한 과태료는 1차 100만원, 2차 200만원, 3차 이상 500만원으로 설정했습니다.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

3. 시사점

이번 전자상거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개정안은 온라인 다크패턴 규제에 대한 공정위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이는 빠르게 변화하는 디지털 마케팅 환경에서 소비자 보호를 강화하려는 장기적인 정책 방향을 시사합니다.

전자상거래를 하는 사업자 또는 통신판매업자는 UI/UX 디자인, 가격 정책, 구독 모델 등에서 소비자 중심의 투명하고 윤리적인 접근 방식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해질 것입니다. 사업자들은 현재 규정된 6가지 다크패턴 유형 외에도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을 참고하여 잠재적으로 문제가 될 수 있는 관행들을 선제적으로 점검하고 개선해 나갈 필요가 있습니다.

공정위는 입법예고 기간(2024년 7월 18일 ~ 8월 27일) 동안 이해관계자, 관계부처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한 후, 법제처 심사 등 관련 입법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개정을 완료할 계획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들은 이 기간 동안 의견을 제시하고, 최종 개정안에 대비하여 내부 시스템과 정책을 정비할 필요가 있습니다.

화우의 전자상거래팀은 AI • 자율차 등 신산업 분야에 대한 지침 마련 등 각종 정부 활동에 즉각 대응할 수 있는 전문 변호사, 공정위와 과기정통부 • 방통위 • 국정원 출신으로 구성하여 TMT 분야의 최신 트렌드를 반영한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Contacts

전상오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087
E. sojeon@yoonyang.com

이희재 파트너변호사
T. (+82) 2 6182 8570
E. heejl@yoonyang.com

이광욱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35
E. kwlee@yoonyang.com

이근우 파트너변호사
T. (+82) 2 6003 7558
E. klee@yoonyang.com

정호선 변호사
T. (+82) 2 6182 8548
E. junghs@yoonyang.com

유현상 변호사
T. (+82) 2 6182 8716
E. hsryu@yoonyang.com

본 내용은 일반적인 정보의 제공만을 목적으로 발행되므로 이에 수록된 내용은 저희 법인의 공식적인 견해나 구체적 사안에 관한 법률의견이 아님을 밝혀드립니다.